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6. 26 선고 2019가합763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한호

변론 종결 2020. 6. 5.

판결 선고 2020. 6.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9,986,5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2014년경 C와 D을 피고로 삼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1416호 사건으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6. 9.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C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132호 사건으로 항소하여 2018. 4. 4. 'C는 원고에게 31,691,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2014. 4. 21.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의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나. 고양시 덕양구 ㄹ 대 410.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토지인데, 2015. 9. 18. 피고 앞으로 2015. 9. 7.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말소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졌다.

① 2015. 9.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777,6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② 2016. 4. 7.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728,4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조합

③ 2016. 4. 7. 위의 ①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

④ 2016. 4.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조합

⑤ 2016. 12. 8.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조합

⑥ 2017. 6. 30. 위의 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017. 5.경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다가구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17. 5.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나.의 ②, ④, ⑤항 기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에 이 사건 건물을 공동담보물로 추가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그중 ⑤항 기재 근저당권의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6. 30.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외에 고양시 덕양구 I 지상의 4층 건물(이하 'I 소재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11. 6. J, K에게 2015.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1984년생으로서 C와 D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① C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에 앞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2015. 9. 7.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매매대금 810,737,500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L 주식회사(C는 위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였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공사대금 1,100,000,000원에 신축하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30세에 불과하였고, 2010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M' 한국지사에, 2016년경부터 2017년경 사이에 'N 주식회사'에 각 근무하면서 월 1,800,000원 내지 2,200,000원 상당의 급여소득을 얻거나 O 주식회사로부터 식음료 구입과 관련한 개인사업자소득을 취득한 것 외에는 별다른 소득활동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자금을 부담할 자력이 없었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이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은 C가 마련한 것이거나, C가 주도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후 피고 명의의 대출금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지출하였으므로(피고 명의 금융계좌들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수시로 거액의 돈이 수수된 정황이 있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다.

③ C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같은 법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지 않으나, C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매수자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금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1 소재 건물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그중 잔금은 100,000,000원)과 2015. 2. 23. 및 2015. 9. 18. F에서 대출받은 돈(약 648,000,000원)으로 매수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금 역시 피고가 2016. 4. 20. 및 2016. 12. 9. H조합에서 대출받은 돈(약 700,000,000원)으로 지출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이후 이를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약 1,290,000,000원)으로 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였다.

② 피고와 C 사이의 금융거래는 피고가 아버지인 C에게 급한 사업자금 등을 대여하고 돌려받거나, C가 2017. 4.경까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이자를 납부하면서 일정 부분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2017. 4. 이후부터는 피고가 계속하여 이자를 납부해왔다), C는 무자력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대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연 C가 무자력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은평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설령 C가 원고에게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으로서,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P은행, F, H조합, Q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5. 8. 31. C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C가 2015. 9. 5.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한 후 그 계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P은행 계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금 81,073,750원이 송금되었으며, 그 밖에 위 계좌를 통해 피고와 C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② C가 피고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4. 7.경 25,000,000원, 2017. 5. 15.경 130,000,000원(자기앞 수표), 2017. 11. 3.경 2,500,000원, 2017. 12. 13.경 16,000,00원 등을 수차에 걸쳐 입금하였고, 피고 역시 위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C 명의의 F 또는 Q은행 계좌로 수차에 걸쳐 송금하거나 L 주식회사에게 송금한 사실, ③ C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고의 H조합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도 위 계좌에서 수차 납입된 사실, ④ C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피고의 H조합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가 수차에 걸쳐 납입된 사실, ⑤ C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통해서도 피고와 다수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⑥ C는 L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2016. 1. 4. 피고를 대리하여 L 주식회사(R이 위 회사를 대리하였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맡아 시공하도록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C가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와 피고 사이에 다수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졌고 C가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었던 L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도록 하면서 딸인 피고를 대신하여 사실상 주도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이나 신축공사의 진행 등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실권리자는 C인데 피고와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C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면서 그에 관한 등기만 피고의 명의로 마치기로 하는 약정에 기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1) 그 밖에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선지

판사김옥곤

판사장진훈

1) 설령 피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상 C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가 피고가 C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보다 다액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자금의 수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